

# 소 장

원 고 1. 황 하 일

2. 윤 윤 권

3. 황 호 열

4. 석 명 한

5. 조 향 민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차병직, 백승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의 1 우서빌딩 4~5층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 원 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의 3 신정빌딩 4층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칠 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 6 (법전빌딩 210호)

서울·서초구 서초동 1574-1  
우서빌딩 4,5층

법 무 법 인 **한결**

변호사 : 朴星民·宋斗煥·金應朝·車炳直  
白承憲·趙光熙·鄭然順·李相姬

TEL : (02) 3487-3000(대), 3471-4004  
FAX : (02) 3487-3811, 3471-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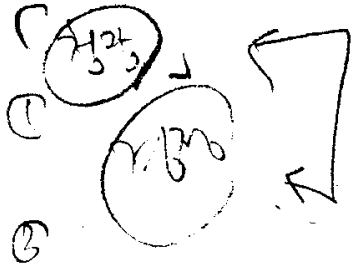
변호사 김 창 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8의 27 동원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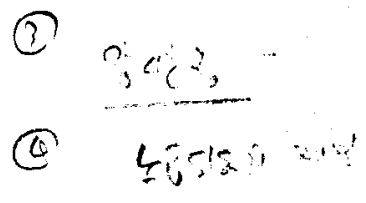
변호사 하 승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0 서정빌딩 4층

피 고 서울지방철도청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대표자 최 춘 길



징계처분 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 가. 원고 황하일, 원고 윤운권, 원고 황효열에 대하여 1999. 4. 28.자로 한 각 파면처분,
  - 나. 원고 석명환, 원고 조항민에 대하여 1999. 4. 28.자로 한 각 감봉 3월 처분 및 1999. 4. 29.자로 한 각 전보처분은,
-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징계 처분

원고들은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각 합격하여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9. 4. 28. 원고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 각 파면처분을, 원고 조항민, 석명한에 대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 각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고, 1999. 4. 29. 원고 조항민, 석명한 대해 각 영주지방철도청과 순천지방철도청으로 전보처분을 하였습니다.

### 2. 징계 사유

#### 가. 원고 황하일에 대하여

원고가,

- ✓ (1) 1997. 4. 27. 09:00경 소의 김봉익계장으로부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질책을 받아 이에 화가나 위 김봉익의 떡살을 잡고 폭언과 주먹을 휘둘렀고,
- (2) 1998. 6. 15. 02:00경 동료직원 김순봉에게 폭언을 하고, 동료 직원 소의 서화조가 화장실에 위 폭언을 타하는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개사과를 시켰으며,
- (3) 같은 해 4. 중순부터 7.까지 근무시간 중에 원고 윤윤권 등과 함께 당무계장 소의 정상준에게 면박을 주었고,
- (4) 같은 해 8. 30. 새로 도입한 철도차량에 대한 작업을 거부하였으며,
- ✗ (5) 같은 해 9. 3. 상사의 승인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 (6) 같은 해 9. 15. 소장이 발부한 주의주치서를 거부하였고,
- (7) 같은 해 10. 3.부터 14.까지 소장의 고유권한인 근무변경에 항의하고자 손가락 성형 수술을 하여 동료들을 선동하였으며,
- (8) 같은 해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 중재 합의사항에 불만을 품고 소속장을 협박하였고,
- (9) 같은 해 10. 16.부터 11. 8.까지 연가·무단결근·병가를 사용하였으며, 병문안 간 상관에게 소속간부를 비난, 협박하였고,
- (10) 같은 해 10. 9. 노동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 (11) 같은 해 11. 29-30.까지 상관을 비난하는 원고 명의의 대자보를 작성하였고,
- (12) 1998년 한해 연,병가 및 지각, 조퇴등을 빈번히 하여 근무를 불성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 나. 원고 윤희권에게 대하여

원고는,

- (1) 1998. 4.중순부터 7.까지 4회에 걸쳐 원고 황하일 등과 함께 당무계장 소외 정상준에게 면박을 주었고,
- (2) 같은 해 9. 3. 근무지를 이석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 (3) 같은 해 9. 9.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작업을 종용하는 담당 검수장 소외 최창준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 (4) 같은 해 9. 5.과 10. 13. 노동조합내에서 유인물 및 게시물의 담당자로서 유인물 '뼈딱이'란과 대자보에 상관을 비방하는 유인물과 노동부 진정서를 편집, 배포하여 상관의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 (5) 같은 해 9. 27.과 10. 3. 관리자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부착하였고, 위 대자보를 철거하라는 소속장의 명령에 불응하는 등 상사의 인격을 모독했으며,
- (6) 같은 해 10. 15. 근무지정이 잘못되었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여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 다. 원고 황효열에 대하여

원고는,

- (1) 1998. 4.중순부터 7.까지 4회에 걸쳐 원고 황하일 등과 함께 당무계장 소외 정상준에게 면박을 주었고,
- (2) 같은 해 10. 10. 및 12-15.사이 순번에 의한 검수승무 근무지정에 항의하며 병가기간 중 노보를 배포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고,
- (3) 같은 해 10. 14. 소장과 면담하면서 문제관련자로 지목한 소속상관으로 하여금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 (4) 1998년 중 잦은 연,병가를 사용하고 지각 및 조퇴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 라. 원고 조항민에 대하여

원고는,

- (1) 1998. 4.중순부터 7.까지 4회에 걸쳐 원고 황하일 등과 함께 당무계장 소외 정상준에게 면박을 주었고,
- (2) 같은 해 10. 9. 관리자의 고유권한인 근무지정에 항의하여 리본을 패용하고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 (3) 같은 해 10. 12. 일부 직원들의 교번 변경과 관련하여 검수장 이치구를 지목하며 '근무불성실 직원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이라고 운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 마. 원고 석명함에 대하여

원고는,

- (1) 1998. 10. 5. 조희시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철도청의 중점 추진시책인 '고객중심경영혁신실천구호'를 작은 목소리로 제창하자는 유인물을 작성, 게시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 (2) 같은 해 10. 12. 일부 직원들의 교번 변경과 관련하여 검수장 이치구를 지목하며 '근무불성실 직원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이라고 운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 (3) 같은 해 11. 15.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조지부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상관이 문제삼자 이에 항의하였으며,
- (4) 같은 해 12. 29. 서울방송과 왜곡된 인터뷰를 하여 철도청의 행정에 불신을 초래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 3. 징계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부당노동행위 →

92 - 2010 995

≡

→ 원고의 정당한 업무

(1) 징계처분 당시 원고 황하일은 서울동차지부 조직부장 및 서울지방본부 대의원, 원고 윤윤권은 서울동차지부 노보편집장 및 대의원, 원고 황효열은 서울동차지부 교선부장, 원고 조항민은 서울동차지부 부지부장, 원고 석명환은 서울동차지부 조사부장이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행한 활동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2) 즉, 지부 임원 및 대의원들과 검수계장들이 모여 노동조합의 현안에 대해 협의한 것과 노보에 비판 기사를 게재한 것을 위계질서 문란행위로, 연가·공무상 병가 등의 사용을 위장병가라고 하여 근무태도로, 노조활동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대차보 부착, 리본달기 등을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출입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노조 사무실 출입만을 문제삼아 무단 이탈이라고 보고 있고, 원고들이 서울동차사무소장과 기술과장을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계질서 문란과 품위손상행위로 평가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3)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공익제보자 탄압

(1)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1998.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중재로 사무소 노사 대표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철도차량에 대한 보수품 유용 및 축상발열문제를 시민단체에 제보하였고, 1998. 12. 29-30 방송 3사와 각 신문사에서 '열차의 탈선 사고 위험'이라는 제목하에 축상발열 문제가, 1999. 2. 5. 문화방송에서 부품유용 문제가 각 방송되자 철도청은 1999. 2. 24.-3. 4. 서울동차사무소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고, 이미 1998. 10. 13. 합의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1999. 4. 28-29. 징계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특별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집중 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특별감사가 공익제보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 (2) 축상발열이란 기차 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심하면 바퀴축이 부러져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으로, 통상 1년에 한 두건 발생할 정도이나 1998. 6.부터 12. 12.까지 서울동차사무소에서 공식통계로 잡힌 것만해도 18건이었고, 1998. 12. 12. 새마을호 제58열차에 축상발열로 화재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호 열차의 부품 유용 및 부품 부족으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1998. 1. 한달간 서울동차사무소가 조사한 것이 84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98. 1.월부터 8.까지 유용건수가 불과 12건 이라고 허위 보고되어 부품 유용사실을 은폐된 사실이 있습니다.

축상발열 및 열차부품 유용문제는 철도 노동자의 산업안전문제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여 원고들이 위 사실을 시민단체에 제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3)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의 공익제보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 라. 재량권의 남용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지지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피고가 허위로 사실을 조작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활동들로서 전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인 바, 피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4.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강제 1호증의 1     | 공무원 징계처분          |
| 1. 강제 1호증의 2     | 공무원 인사발령          |
| 1. 강제 2호증의 1     |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통보 |
| 1. 강제 2호증의 2내지6  | 각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1. 강제 3호증의 1내지 3 | 뉴스기사              |
| 1. 강제 3호증의 4     | 신문기사              |
| 1. 강제 4호증        | 본청 특별감사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장부분   | 1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납부서    | 1부   |

1999. 9. 9.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서울행정법원

귀중

hhy9909p.hwp

서울·서초구 서초동 1574-1  
우서빌딩 4,5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朴星民·宋斗煥·金應朝·車炳直  
白承憲·趙光熙·鄭然順·李相姬

TEL : (02) 3487-3000(대) 3471-4004  
FAX : (02) 3487-3811, 3471-0234